

1. 개정이유

2020년 6월 9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(안 제12조의7, 제12조의8, 제12조의9)

“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,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”

나.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(안 제23조의3)

“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(재활용가능자원,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)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,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”

다.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(안 제25조의3)

“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·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·분석·제공 등으로 설정”

라.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(안 별표2)

“제과점업·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, 식품점객업·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”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법 제28조의2”를 “법 제15조의6”으로, “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(이하 “유통지원센터”)”를 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(이하 “보증금관리센터”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통지원센터”를 “보증금관리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의5제1항 중 “용기”를 “용기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의 계산식 중 “용기 개수 -”를 “용기등의 개수 -”로, 같은 항의 계산식 중 “비용기 개수)”를 “용기등 개수)”로, 같은 항의 계산식 중 “비용기보증금액”을 “용기등의 보증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통지원센터”를 “보증금관리센터”로, “4월 30일”을 “3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서(사용실적에 한함)

제12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용기”를 “용기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용기가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

제12조의6의 제목 “(비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)”을 “(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비용기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, “소매업자들”을 “소매업자 등을”로 한다.

제12조의7부터 제1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7(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(이하 “보증금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의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.

② 보증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환경·법률·경제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보증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·의결한다.

1.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한 용기등의 회수,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
2.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의 산정기준, 부과·징수, 지급 등에 관한 사항
3.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
④ 위원의 임기, 논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의8(용기등의 회수,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)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2.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,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제12조의9(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등) ① 법 제15조의6에 따른 보증금관리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,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보증금관리센터 임원의 정원·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빈용기재사용생산자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빈용기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확인서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빈용기재사용생산자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”로, “첨부하여”를 “첨부(제1호, 제2호 및 제4호는 보증금관리센터

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)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비용기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비용기(다른 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비용기는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용기등(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용기등은”으로,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와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비용기의 재사용”을 “용기등의 재사용”으로, “비용기의 재활용”을 “용기등의 재활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비용기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,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비용기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비용기등”으로,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와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와”로 한다.

제2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3조의3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)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.

1. 수출용 중고의류
 2.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
 3.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
 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
- ② 법제34조의5제4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

를 받은 자 또는 같은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
3. 재활용(수출을 포함한다, 이하같다)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·운반하거나, 압축·파쇄·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
제25조의3(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) ① 법 제35조의10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·외 수급상황,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2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거·재활용 촉진 및 가격안정화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3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·매입 등 수급안정화 계획수립·시행
4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5.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28조제6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상황 및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, 관련업계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·운영6.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조직·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8조제3항제5호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 전문기관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5호의2 중 “비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,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의 지급, 관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의3 중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비용기보증금”을 “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, “재사용 표시”를 “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비용기재사용생산자:”를 “보증금대상사업자:”로, “비용기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비용기나”를 “유통지원센터, 보증금관리센터 등의 의무이행, 용기등과”로 한다.

제28조제6호의2 중 “비용기보증금액: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액: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중 “합성수지컵”을 “종이컵, 합성수지컵”으로 하고, 같은 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하고, 제1호아목을 제1호자목으로 하며, 같은 목(종전의 아목) 본문 중 “제과점업”을 “음식점 및 주점업”으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제품을”을 “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호의 준

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

무상제공금지(다만,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)

별표 2에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4호나목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, 같은 표 제5호의 준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1회용 우산 비닐

무상제공금지(다만,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)

별표 2 제6호의 준수사항란 중 “슈퍼마켓”을 “종합 소매업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“슈퍼마켓”을 “종합 소매업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 제목 중 “(제13조 관련)”을 “(제13조의2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8호의2서식 중 “출고량(용도별)”을 “용도별 출고량(사용량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”를 “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제2항 중 “주입되는”을 “주입 또는 판매되는”으로, “소주/맥주/음료”를 “소주/맥주/음료/커피/다류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(유통지원센터)”를 각각 “(보증금관리센터)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중 “비용기보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호 중 “비용기보보증금”을 “자원순환보증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3, 제25조의3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

신청인	상 호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전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실적	① 미반환보증금(백만원)	② 사용용도	지출액(백만원)

()년도 미반환 보증금 사용계획	① 미반환보증금 예상액(백만원)	② 예상 사용용도	지출 예상액(백만원)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 사용 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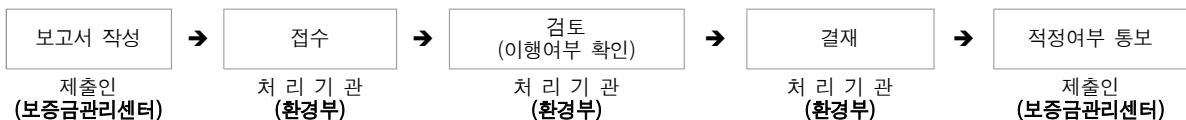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가.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나. 용기등의 보관,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다. 용기등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·개발 라.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마. 용기등 회수·재활용에 드는 비용 바.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.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- ①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(당해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- 당해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용기등 개수) ×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
- ②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

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			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				
	주 소	법인등록번호				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				
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	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					
	① 제품명	규 격(ml)	비용기보증금 (원/개)	② 취급수수료 (원/개)	③ 출고 예상량 (개)	④ 재활용의무량 (③×80%)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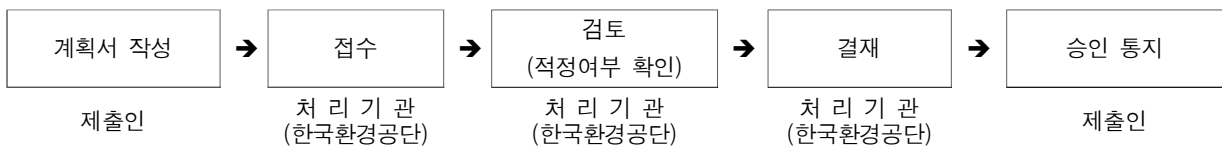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·재사용 계획 2. 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확인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- ①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습니다.
- ② 도매·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 취급수수료를 적습니다.
- ③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해당 연도의 출고 예상량을 적습니다.
- ④ 해당 연도 출고 예상량에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과된 의무율을 곱한 수량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
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빈용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	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					출고량		재활용 의무량		회수량		재사용량		재활용량		재활용률 (wt%)
	제품명	규격 (ml)	빈용기 보증금 (원/개)	취급 수수료 (원/개)	중량 (g/개)	(개)	(kg)	(개)	(kg)	(개)	(kg)	(개)	(kg)	(개)	(kg)	
계																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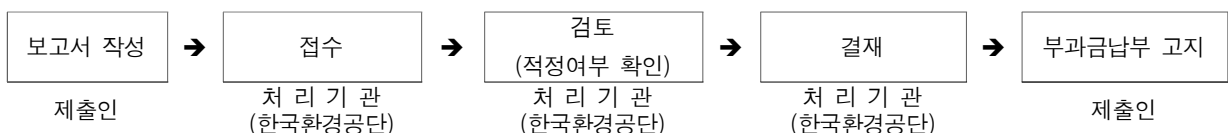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 2.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(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,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) 회수 실적 증명서류 3. 회수된 용기등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용기 등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.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(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 제품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,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합니다) 지급 내역 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작성요령

1. 출고량과 회수량은 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치와 동일하여야 하며, 회수량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, 표준용기는 포함합니다.
2. 재사용량은 회수된 빈용기 중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재사용된 용기등의 양을 말합니다.
3. 재활용량은 회수된 용기등 중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 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용기등의 양을 말합니다.
4. 재활용률은 출고량 중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<u>법 제28조의2</u>에 따른 <u>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</u>(이하 “유통지원센터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<u>유통지원센터</u>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2조의5(미반환보증금의 산출·사용계획 등) ①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<u>용기</u>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법 제15조의6</u>----- <u>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</u>(이하 “<u>보증금관리센터</u>”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보증금관리센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의5(미반환보증금의 산출·사용계획 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용기등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(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-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) ×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

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빈용기의 회수·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1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가 미회수되어 재활용되는 양

----- 용기등의 개수 - ----- 용기등의 보증금액
---- 용기등 개수) ----- 용기등의 보증금액

② ----- 보증금관리센터-----

----- 3월 31일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서(사용실적에 한함)

③ ----- 용기등-----

-----.

1.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용기가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

2. (생략)

제12조의6(비용기보증금 미지급
소매업자 신고 보상)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6(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
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) ①

----- 자원순환보증금-----
소매업자
등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7(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
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(이하 “보증금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의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한다.

② 보증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환경·법률·경제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중에서 환경

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보증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·의결한다.

1.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한 용기 등의 회수,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

2. 자원순환보증금,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의 산정기준, 부과·징수,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3.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
④ 위원의 임기, 논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의8(용기 등의 회수,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)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2.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한 재활

<신 설>

<신 설>

제15조(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의 제출) ① (생략)

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재 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

용가능자원의 회수,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
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제12조의9(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등) ① 법 제15조의6에 따른 보증금관리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,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보증금관리센터 임원의 정원·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5조(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보증금대상사업자-----

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·재사용 계획
2. 비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

제17조(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(생략)

② 영 제26조에 따라 비용기재 사용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
2. 전년도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

-----.

1. 자원순환보증금 -----

2. 보증금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확인서

제17조(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보증금대상 사업자-----

----- 첨부(제1호, 제2호 및 제4호는 보증금관리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)하여 -----
--.

1. ----- 자원순환보증금 -----

2. -----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

품의 빈용기(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,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) 회수 실적 증명서류

3.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

4.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(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,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) 지급 내역

제21조의2(빈용기의 회수 및 축진을 위한 사업) 법 제28조의2제4항제5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의 축진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

품의 용기등(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용기등은 -----

----- 보증금대상사업자와 -----

3. ----- 용기등의 재사용 -----
----- 용기등의 재활용 -----

4. 자원순환보증금 -----
----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등-----
----- 보증금대상사업자와 -----

<삭 제>

탁받은 사업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23조의3(비축 대상 품목 및 비
용 지원) ① 법 제34조의5제3항
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
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
말한다.

1. 수출용 중고의류
2.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
병류
3.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9조에
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
물질 또는 물건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비축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
하는 품목

②법 제34조의5제4항에서 “환경
부령으로 정하는 「폐기물관리
법」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
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
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
같은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
리신고자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
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
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

<신 설>

허가를 받은 자

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
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

3. 재활용(수출을 포함한다, 이
하같다)을 목적으로 재활용가
능자원을 수집·운반하거나,
압축·파쇄·용융 등 중간가
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
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

제25조의3(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
운영) ① 법 제35조의10제3항에
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
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·
외 수급상황, 가격 등에 대한
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2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거·
재활용 촉진 및 가격안정화
등을 위한 조사·연구

3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·
매입 등 수급안정화 계획수립
· 시행

4.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
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
5.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

제28조제6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상황 및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, 관련업계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·운영6.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조직·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8조제3항제5호의 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제26조(보고 및 검사 등)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5의2.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비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

제26조(보고 및 검사 등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-----
--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,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의 지급, 관리 등-----

경우

5의3.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기재사용생산자의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비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~ 14. (생략)

제27조(장부의 기록·보존)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·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재활용의무생산자(비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): 다음 각 목의 장부

가. ~ 다. (생략)

3. (생략)

4. 비용기재사용생산자: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·반환 관리대장

--

5의3. -----
--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-----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-----

6. -----
보증금대상사업자 -----

7. ~ 14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장부의 기록·보존) ① 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보증금대상사업자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4. 보증금대상사업자: -----
----- 자원순환보증금 -----

--

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7조의3(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) 법 제36조의2에서 “<u>재활용의무생산자,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비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·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제28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6의2. 제12조의2에 따른 <u>비용기보증금액</u>: 2016년 1월 1일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의3(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) ----- ----- <u>유통지원센터, 보증금관리센터 등의 의무이행, 용기등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6의2. ----- <u>자원순환보증금액</u>: -----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